

2019. 12. 27.

2019년 **Spo**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Spo 경영지원팀
기획홍보

목 차

I. 인권경영 추진개요	1
① 추진개요	1
② 스포원 인권경영 추진전략	2
③ 그간 추진경과	3
II. 인권영향평가 개요	4
① 평가개요	4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	6
① 평가결과 요약	6
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결과	7
③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결과	14
IV. 인권경영 개선과제	16
V. 향후계획	17
【붙임】 2019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서	18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2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7

2019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전 세계적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 증가

-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 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여러 규범과 인권 이행원칙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우리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국가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토대로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인권경영의 실행으로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 및 지역시민에 대해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책임,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인권경영의 빠른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인권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② 스포원 인권경영 추진 전략

비 전	인권신장 · 인권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으뜸 공기업
목 표	변화와 혁신으로 인권경영 가치창출
추진단계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①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②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③ 인권경영 확산
2단계 인권영향 평가실시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① 인권경영 실행 ② 인권경영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① 구제절차 마련 ② 구제 시행 및 개선

③ 그간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비 고
2018. 11. 14.	스포원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2018. 12. 5.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2019. 1.	인권현황 기초조사 및 인권경영 선도기관 벤치마킹	
2019. 2. 17.	인권경영 선언문(초안) 확정 및 내·외부 의견수렴(2주간)	
2019. 2. 21.	2019년도 스포원 인권경영 교육훈련 계획 수립	
2019. 2. 28.	스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위촉 2명, 임명 3명)	
2019. 3. 8.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인권경영선언문 심의·확정)	
2019. 3. 22.	제88차 이사회 개최(인권경영선언문 원안 승인)	
2019. 3. 29.	인권경영 선언식 및 인권교육 개최 (선언문 공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2019. 3. 30.	유관기관 인권경영 선언문 공유	
2019. 6. 26.	인권담당자 교육 실시 (제1차 부울경 공공기관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수료)	
2019. 8. 11.	전 직원 사이버 인권교육(5시간 이상) 의무이수 통보	
2019. 8. 17.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세부 계획 수립	
2019. 8.	인권침해 구제센터 마련(오프라인, 온라인)	
2019. 9. 2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전 직원 의견 수렴(2주간)	
2019. 11. 21.	인권담당자 교육 실시 (제2차 부울경 공공기관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수료)	
2019. 11. 28.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계획 수립	
2019. 11. 29.	인권영향평가 관련 평가방법 및 교육	
2019.12.4.~6.	인권영향평가 1차 평가 실시	

II 인권영향평가 개요

1 평가개요

*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평가기간 : 2019. 12. 4. ~ 6.(3일간)

분야별 1차 평가부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분야 157개 지표)**

연번	분 야	주관부서	비 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기 획	▶ 1차평가 : 주관부서 자체평가 ▶ 2차평가 :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검토
2	고용상의 비차별	총 무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총 무	
4	강제 노동의 금지	총 무	
5	아동노동의 금지	총 무	
6	산업안전 보장	총 무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총무, 시설, 방송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감사평가	
9	환경권 보장	시설관리	
10	고객인권 보호	CS, 공원, 방송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5개분야 28개 지표)**

사업분야	연번	분 야	주관부서	비 고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등	1	공정한 운영	공원사업	▶ 1차평가 : 주관부서 자체평가 ▶ 2차평가 :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검토
	2	시민 안전 보장	공원사업	
	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공원사업 시설관리	
공원환경 수변공원, 가족공원, 조깅로, 자연계순환로 등	4	근무자 인권 보호	공원사업 시설관리	
	5	지역주민 환경보장	공원사업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단 운영 전반

-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 산업안전, 소비자(고객)인권 보호 등
- 평가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시범운영) : 공단 주요사업 중 선정

- 공단 설립목적 등 공단의 주요 핵심업무와 관련된 사업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인권 리스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목록

※ 이번 평가는 시행 원년으로 시범적으로 ‘체육시설, 공원환경 분야’로 설정하여 사업부서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자체 설계 하였음.

구 분	주요사업 목록
사업 1(14지표)	체육시설(실내외테니스장, 축구풋살장,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장)
사업 2(14지표)	공원환경(수변광장, 가족공원 등)

□ 평가방법 및 기준

○ (1차평가) 분야별 주관부서 지정 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 지표에 따른 관련규정, 공문,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답변결과*에 체크

* 답변결과 :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 부서별 답변결과에 따라 각 지표별 수치화를 위해 점수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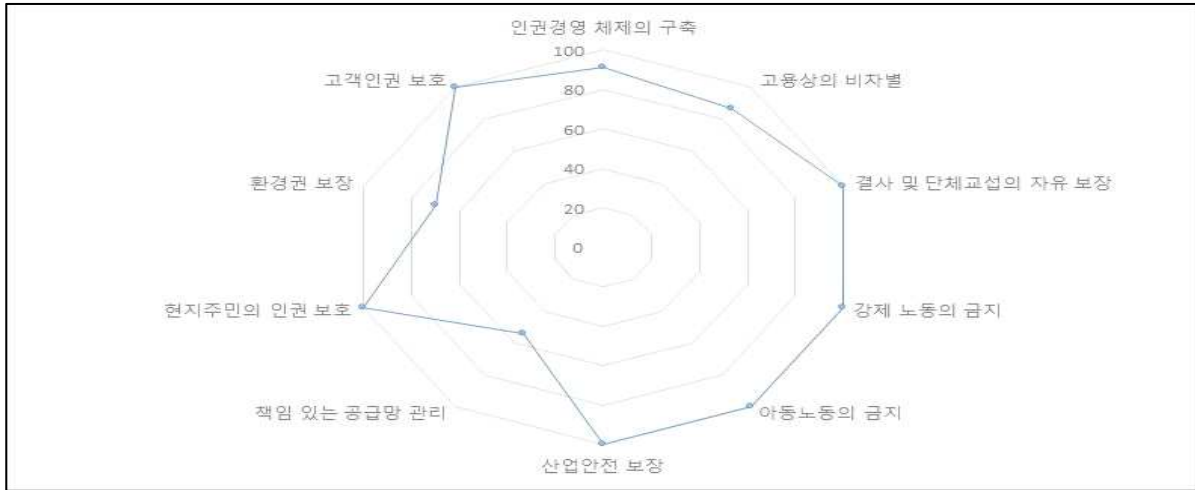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2차평가)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심의

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요약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89.43점 (총 득점 : 220점 / 246점)



○ 분야별 점수

- 기관운영 평가 세부지표 : 157개 지표 중 123개

· 예 : 101개, 보완필요 : 18개, 아니오 : 4개, 해당없음 : 34개

연번	분야	점수	연번	분야	점수
종합점수		(246점 / 220점 [89.43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1.19	6	산업안전 보장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86.6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4.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9	환경권 보장	7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	고객인권 보호	100

□ 주요사업 인권경영 결과

○ 분야별 점수 (체육시설 : 100점, 공원환경 : 96.15점)

- 주요사업 평가 세부지표 : 27개(예 : 26개, 보완필요 : 1개, 아니오 : 0개)

연번	체육시설 분야	점수	연번	공원환경 분야	점수
종합점수 28점 / 28점 [100점]		종합점수 26점 / 25점 [96.15점]			
1	공정한 운영	100	1	공정한 운영	100
2	시민 안전 보장	100	2	시민 안전 보장	100
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4	근무자 인권 보호	100	4	근무자 인권 보호	75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해당사항 없음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결과

□ **종합점수 : 89.43점(10개 분야 157개 세부지표)**

연번	분 야	지 표	점 수	
종합점수(특점)		(220점 / 246점)	89.43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계	91.19	
		지표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지표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지표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지표4	인권경영성과	64.29
		지표5	구제절차 마련	91.67
2	고용상의 비차별	계	86.67	
		지표1	고용상의 비차별	80.00
		지표2	고용상의 남녀비차별	100
		지표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80.00
		지표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사항 없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계	100	
		지표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지표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지표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지표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강제 노동의 금지	계	100	
		지표1	강제노동금지	100
		지표2	협력회사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사항 없음
5	아동노동의 금지	계	100	
		지표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지표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사항 없음
6	산업안전 보장	계	100	
		지표1	작업장 안전	100
		지표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지표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지표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계	54.17	
		지표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2.50
		지표2	모니터링 실시	50.00
		지표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50.0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계	100	
		지표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지표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계	70.00	
		지표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
		지표2	환경정보의 공개	해당사항 없음
		지표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지표4	비상계획 수립	100
10	소비자(고객)인권보호	계	100	
		지표1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지표2	서비스 결함시 조치	100
		지표3	고객 사생활 보호	100

-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89.43점으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소비자(고객) 인권 보호’의 6개 분야는 가장 높은 100점을 기록하였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54.17점, ‘환경권 보장’은 70점으로 80점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는 근로기준법 및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고 원만하고 공정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단규에서 차별적 요소 등을 개선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는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의 사전 검토 등 타인의 음원저작권, 디자인 등을 이용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철저한 검토와 적절한 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반면,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시행원년으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보고 및 개선사항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의 복리후생제도 및 임금 등의 차별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환경권 보장’ 분야는 환경경영 체제의 수립이 체계적이 못하여 보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는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협력(용역)회사 차원에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분야별 세부내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지 표		점 수
	계		
지표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지표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지표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지표4	인권경영성과		64.29
지표5	구제절차 마련		9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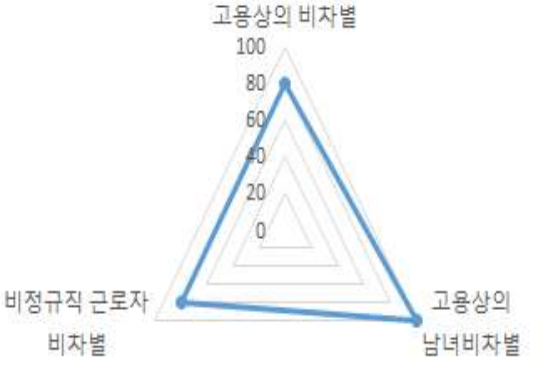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91.19점이며, 5개의 지표로 그중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가 100점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표로는 '인권경영의 성과'로 인권경영의 성과는 성과 보고의 미실시로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판단 됨.**

2. 고용상의 비차별

	지 표		점 수
	계		
지표1	고용상의 비차별		80.00
지표2	고용상의 남녀비차별		100
지표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80.00
지표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사항 없음

-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취업규정 등 단규 등을 통해 명시화 되어있고, 공기업 블라인드채용 NCS기반 채용 등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되고 있음.**
 다만, 복리후생제도 및 임금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어 공단 재정 사항 고려와 노사협의 등 내부조율이 필요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표는 해당사항 없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지 표		점 수
	계		
지표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지표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지표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지표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해당사항 없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노조와의 단체교섭 보장 및 사측의 성실한 이행으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원만하고 공정한 소통으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 한다.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는 해당사항 없음

4. 강제 노동의 금지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강제노동금지	100
지표2	협력회사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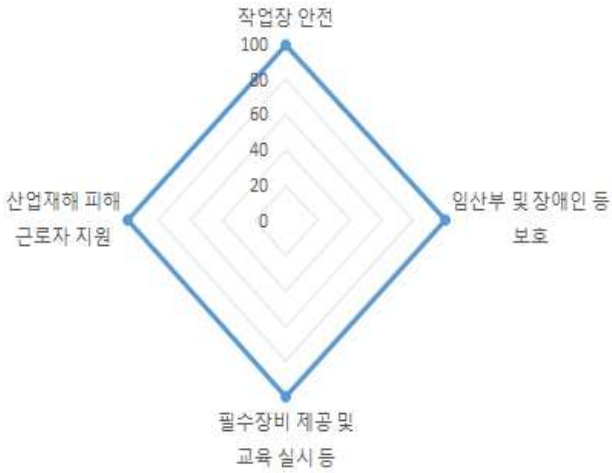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과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등 단규를 준수 하며, 자회사 및 협력회사의 강제노동 예방지표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

5. 아동노동의 금지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지표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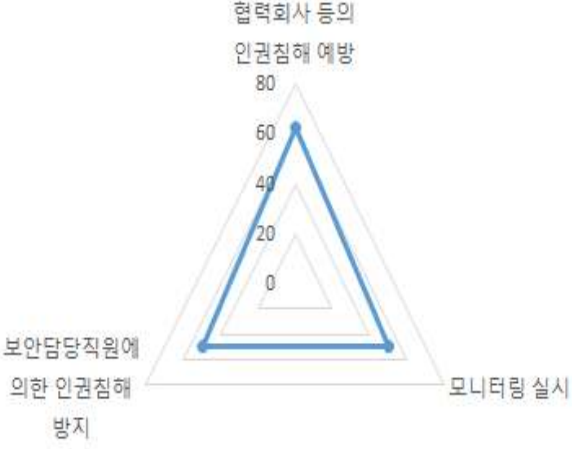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과 공단 인사규정 및 기능인재추천채용 시행내규 등 단규를 준수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음.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는 해당사항 없음

6. 산업안전 보장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작업장 안전		100
	지표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지표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지표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특히 스포원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들이 찾는 체육시설 및 공원 등 레저시설로 시민의 생명권, 안전권 보호를 위해 근무 현장에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음.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 표		점 수
	계		
지표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2.50
지표2	모니터링 실시		50.00
지표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50.00

■ 평가 분야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지표로 **54.17**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분야에 대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파악 됨.
 ■ 개선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정해 모든 계약시 협력회사 등에 인권침해 예방 준수 각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협력회사 인권 보호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지표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의 사전 검토 등 타인의 음원저작권, 디자인 등을 이용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철저한 검토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인권 존중 위해 정진 함.

9. 환경권 보장

	지 표		점 수
	계		
지표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
지표2	환경정보의 공개		해당사항 없음
지표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지표4	비상계획 수립		100

- 환경경영 체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환경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시설 등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체계적 환경경영체제를 수립하고 공원·체육시설과 환경이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기적 점검도 필요

10. 소비자(고객) 인권보호

	지 표		점 수
	계		
지표1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지표2	서비스 결함시 조치		100
지표3	고객 사생활 보호		100

-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이용시설 등 서비스에 있어, 생명, 건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윈 안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 및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준수 하고
-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초보고객을 위한 경륜참여 안내물 및 홍보브로슈어를 제작, 공단 홈페이지를 저시력자 편의를 위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여 화면을 인식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도입하는 등 고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함.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음.

③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결과

□ 종합점수 (체육시설 : 100점, 공원환경 : 96.15점)

연번	주요사업	분야별 지표		점 수
1	체육시설 분야	계	28점 / 28점	100
		지표1	공정한 운영	100
		지표2	시민 안전 보장	100
		지표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지표4	근무자 인권 보호	100
		지표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2	공원환경 분야	계	25점 / 26점	96.15
		지표1	공정한 운영	100
		지표2	시민 안전 보장	100
		지표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지표4	근무자 인권 보호	75
		지표5	지역주민 환경보장	해당사항 없음

- 체육시설 사업분야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체육시설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시설이용자의 권리와 제약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공정한 혜택을 위해 온라인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응급환자 등 비상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응급용 기기와 대처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 사회적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등이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성보호를 위한 수유실이 마련되어 편의를 돕고 있음.
- 다만, 공원환경 분야 현장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 보호 장구 및 근무복 등을 제때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분야별 세부내용

1. 체육시설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공정한 운영	100
지표2	시민 안전 보장	100
지표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지표4	근무자 인권 보호	100
지표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2. 공원환경

지 표		점 수
계		100
지표1	공정한 운영	100
지표2	시민 안전 보장	100
지표3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지표4	근무자 인권 보호	75.00
지표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IV

인권경영 개선과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항목	분야	항목	개선과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④. 인권경영 성과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및 개선 과제 실행
2		1-⑤. 구제절차 마련	- 인권경영 실행지침 중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 대한 성실한 조력 등 지침 개정 추진
3	고용상의 비차별	2-①. 고용상 비차별	-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방안 강구
4		2-③.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개선을 위한 노력
5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계약 시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준중에 관한 내용 서면 요구 · 모든 공급업자와 동업자들이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 포함
6		7-②. 모니터링 실시	-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7		7-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교육 실시 및 외주 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 요구 및 모니터링 실시
8	환경권 보장	9-①.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 환경경영체제 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및 점검 실시 · 환경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 환경과 관련한 노동자 교육 및 훈련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항목	분야	항목	개선과제
1	공원환경	4. 근무자 인권 보호	- 근무자의 작업복 등 안전장구 등 지급·보완

③ 2차평가 실시 및 개선의견

□ 2차평가 실시개요

- 일 시 : 2019. 12. 26.(목), 14:00 ~ 16:00
- 장 소 : 공단 본부장실
- 참석대상 : 위원 5명 (위촉 2명, 임명 3명) ※ 간사 : 기획홍보팀장
 - 임 명 : 위원장(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노사협의회공동의장
 - 위 촉 : 김혜리 변호사, 박기표 노무사
- 내 용 : (제2019-2호) 2019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안) 상정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심의 의결
- 평가결과 개선의견

항목	위원	개선의견
1	박기표 노무사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고용상의 비차별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시 주관부서의 의견 뿐만아니라 직접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도 같이 평가 바람.
2	김혜리 변호사	- 인권침해 구제센터의 익명신고 절차 마련
3	노사협의회 공동의장 (이정윤 위원)	- 갑질, 성희롱,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차원에서 평가지표에 넣는 방안 검토
4	경영지원실장 (강문수 위원)	- 1차평가 시 자체검증을 위한 타부서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V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 이사장 결재 : 즉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 결과 보고 후
- 인권경영의 시행에 대한 성과와 개선 과제 이행 : 결과 보고 후
- 2019년 인권경영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결과보고 : 2020년

붙임 : 2019년 인권영향평가결과서 1부. 끝.

【붙임】

Spo 부산지방공단스포윈

2019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Spo 경영지원팀
기획홍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표

구분	분야	답변결과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제외)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24	6			
2	고용상의 비차별	14	12	2			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				2
4	강제 노동의 금지	7	7				4
5	아동노동의 금지	2	2				12
6	산업안전 보장	16	16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	1	9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4	4				6
9	환경권 보장	11	6	1	4		7
10	소비자(고객)인권 보호	15	15				
합 계		123	101	18	4		3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분 야	지 표	점 수	
종합점수(특점)		(220점 / 246점)	89.43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계	91.19	
		지표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지표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지표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지표4	인권경영성과	64.29
		지표5	구제절차 마련	91.67
2	고용상의 비차별	계	86.67	
		지표1	고용상의 비차별	80.00
		지표2	고용상의 남녀비차별	100
		지표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80.00
		지표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사항 없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계	100	
		지표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지표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지표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지표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강제 노동의 금지	계	100	
		지표1	강제노동금지	100
		지표2	협력회사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사항 없음
5	아동노동의 금지	계	100	
		지표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지표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사항 없음
6	산업안전 보장	계	100	
		지표1	작업장 안전	100
		지표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지표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지표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계	54.17	
		지표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2.50
		지표2	모니터링 실시	50.00
		지표3	보안담당직원에게 의한 인권침해 방지	50.0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계	100	
		지표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지표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계	70.00	
		지표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
		지표2	환경정보의 공개	해당사항 없음
		지표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지표4	비상계획 수립	100
10	소비자(고객)인권보호	계	100	
		지표1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지표2	서비스 결함시 조치	100
		지표3	고객 사생활 보호	10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세부 평가 지표

분 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총점 : 91.19점]					
담당부서 / 담당자	기획홍보	담당팀장		정 한 성		
		담당자		김 경 진		
1-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12점 / 12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기획재정-775(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및 대내외 공표 계획)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기획홍보-775(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및 대내외 공표 계획)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기획홍보-440, 560 (선언문 의견수렴 계획 보고)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기획홍보-440 (선언문 의견수렴 계획 보고)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기획홍보-755, 기획홍보-822 (의견수렴 및 선언문 알림)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14조
소 계	6					
1-②.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12점 / 12점(100점)]						
1	공단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기획재정-2044(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추진계획)
2	공단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기획재정-2044(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추진계획)
3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4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기획재정-2044(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추진계획)
5	공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기획재정-2044(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추진계획)
6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기획재정-2044(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추진계획)
소 계	6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③.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점 / 10점(100점)]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기획재정-2230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 한다.	✓					·기획재정-2044,인권경영 추진계획 ·인권경영실행지침 제15조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기획재정-2044,인권경영 추진계획 ·실행지침 제4장 제18조~제24조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30조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7조
소 계		5					
1-④. 인권경영 성과							[14점 / 9점(64.29점)]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5조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기획홍보-2692(2019.12.21.)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계획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7	결과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소 계		2	4				
1-⑤. 구제절차 마련							[12점 / 11점(91.67점)]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6조~제30조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 구제절차 준수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기획홍보-1954 구제절차 마련 세부 계획 ·홈페이지 경영정보 인권경영구제절차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기획홍보-1954 구제절차 마련 세부 계획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실행지침 중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 대한 성실한 조력 등 지침 개정 추진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기획홍보-1954 구제절차 마련 세부 계획
소 계		5	1				
합 계		25	5				

분 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총점 : 86.67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이 현 민			
			담당자	이 인 천			
2-①. 고용상 비차별		[10점 / 8점(80.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제2항제2호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통보 [예산담당관-12650(2017.7.17.)]
2	공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채용계획서, 채용공고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재정사항을 고려 등 노사협의 및 내부 조율 필요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5조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5조
소 계		4		1			
2-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12점 / 12점(100점)]					
1	공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통보 [예산담당관-12650(2017.7.17.)]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보수규정 준수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5조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5조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5조
6	공단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소 계		6					
2-③.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6점 / 0점(83.33점)]					
1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취업규정 제5조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취업규정 제5조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공단 재정사항을 고려 등 노사협의 및 내부 조율 필요
소 계		2		1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④.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사항 없음	
1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
2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2	X
합 계		12		2		2	

분 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이 현 민		
			담당자		서 경 숙		
3-①.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8점 / 8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4	공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 계		4					
3-②.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점 / 10점(100점)]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부산체육진흥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제7조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부산체육진흥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제7조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부산체육진흥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7조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부산체육진흥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7조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부산체육진흥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7조
소 계		5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3-③.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점 / 10점(100점)]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2	공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9조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단체협약서 제30조 근로기준법 준용
4	공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제3항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소 계		5				
3-④.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조치						해당사항 없음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해당사항 없음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2	
합 계		14			2	

분 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이 현 민		
				담당자	서 경 숙		
4-①. 강제노동 금지						[14점 / 14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준수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3	공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4	공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5	공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6	공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준수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소 계		7				1	
4-②.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사항 없음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덴마크 HRCA
소 계						3	
합 계		7				4	

분 야		5. 아동노동의 금지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이 현 민		
				담당자	이 인 천		
5-①. 연소자 고용금지						[4점 / 4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기능인재추천채용 시행내규 제3조 (추천의 자격요건)제7호 만18세 이상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
3	공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기능인재추천채용 시행내규 제3조 (추천의 자격요건)제7호 만18세 이상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해당사항 없음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2				4	
5-②.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사항 없음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해당사항 없음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해당사항 없음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해당사항 없음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해당사항 없음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직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해당사항 없음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8	
합 계		2				12	

분 야		6. 산업안전 보장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이 현 민		
				담당자	정 철 호		
6-①. 작업장 안전						[10점 / 10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					스포원 재난 안전관리 계획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스포원 총괄 재난 안전관리 계획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관리-1098('19.5.5)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시설관리-108(2019.1.10.) 스포원 환경미화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원 안전기본 계획
소 계		5					
6-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점 / 8점(100점)]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29조(법정휴가 및 모성보호)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정 제29조의1(임산부의 보호 등)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시설관리-1464('19.9.2.) ·시설관리-1844('19.11.16.) ·시설관리-1628('19.9.30.)
소 계		4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보 없음	해 당 없음	
6-③.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8점 / 8점(100점)]
1	공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교육훈련계획 :총무-2617('19.3.31)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항 ·산업안전교육 실시
4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해당사항 없음
5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총무-2436('19.3.24.)
소 계		4				1	
6-④.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6점 / 6점(100점)]
1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복리후생규정시행내규 제5조(기타 후생비)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복리후생규정시행내규 제5조(기타 후생비)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윈 안전기본 계획 ▷안전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소 계		3					
합 계		16				1	

분 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총점 : 54.17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무, 시설, 방송	담당팀장		담당부서		
			담당자		선임직원		
7-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점 / 5점(62.5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7조(하청업자 인권준중 책무) 이행
2	공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4	공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소 계		1	3				
7-②. 모니터링 실시					[4점 / 2점(50.00점)]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소 계			2				
7-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점 / 4점(50.00점)]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소 계			4				
합 계		1	3				

분 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총 무		담당팀장	감사평가		
				담당자	박 중 현		
8-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2점 / 2점(100점)]							
지 표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 서면접-574(2019.4.13.) (상생협의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 해당사항 없음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 해당사항 없음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기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해당사항 없음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1				6	
8-②.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6점 / 6점(100점)]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 방송전산-2019(2019.8.19.) 유튜브채널 운영시 음원저작권 해결방안 검토보고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 방송전산-2019(2019.8.19.) 유튜브채널 운영시 음원저작권 해결방안 검토보고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 방송전산-891(2019.4.3.) 2019년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출 의뢰
소 계		3					
합 계		4					

분 야		9. 환경권 보장 [총점 : 70.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시설관리			담당팀장	박 정 봉	
					담 당 자	김 성 만	
9-①.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10점 / 1점(1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시설관리-108(2019.1.6.) 스포원 환경미화 계획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이용시설 등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 평가 실시후 개선과제 검토
소 계				4			
9-②. 환경정보의 공개						해당사항 없음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3	

9-③.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2점 / 2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기획재정-1287('13.10.31) 해양테포츠평원조성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해당사항 없음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해당사항 없음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 해당사항 없음
소 계		1			4	X

9-④. 비상계획 수립 **[10점 / 10점(100점)]**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총무-3033('19.10.10) 총괄재난·안전관리계획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총무-8033('19.1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총무-3033('19.10.10) 총괄재난·안전관리계획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총무-3033('19.10.10) 총괄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 안전관리 조직도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비상연락망 구축)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경주운영-53('19.1.4) 2019년 응급구급차 운영계획
소 계		5				X
합 계		6		4		X

분 야		10. 소비자(고객)인권 보호 [총점 : 100점]					
담당부서 / 담당자		CS혁신, 공원사업, 감사평가		담당팀장	담당팀장		
				담 당 자	선임직원		
10-①. 소비자(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2점 / 12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시설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 기울이고 있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원 안전기본 계획
2	공단은 이용시설 등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생명, 건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원 안전기본 계획 ▷안전점검의 날 지정 및 정점점검 실시
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이용방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홈페이지 내 경륜스포츠헤터, 공원시설별 시설 이용안내 및 요금 안내 등
4	공단은 이용시설 등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시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라 광고심의 기준 준수(사행성 유발 여부, 광고의 윤리성, 공정성,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
5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시설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홈페이지 내 경륜스포츠헤터, 공원시설별 시설 이용안내 및 요금 안내 등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CS혁신-405(19.02.15) 19년 공단 홍보브로슈어 제작보고 ·CS혁신-552(19.03.07)외국인 초보고객을 위한 경륜참여 안내물 제작
소 계		6					
10-②. 제품(서비스) 결함 시 조치					[6점 / 6점(100점)]		
1	공단은 이용시설 등 서비스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응급복구 등 조속히 보완·조치한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원 안전기본 계획 (시설별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상황별 행동 요령에 따른 조치)
2	공단이 제공하는 이용시설 등 서비스로 인한 사고·문제 발생시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해당시설(서비스 등)을 통제하거나 수리·개선 한다.	✓					· 경주운영-414(2019.1.26.) 2019년도 경주운영 비상사태 대비 기본계획(비상상황 유형별 대응방안에 따라 조치)
3	이용시설 등 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 총무-6262(2019.7.31.) 2019년도 스포원 안전기본 계획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따른 공제회 신고 및 보상절차 시행 등)
소 계		3					

10-③. 소비자(고객) 사생활 보호

[12점 / 12점(100점)]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방송전산-242(11.12.16) 스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방송전산-140(2019.1.12) 개인정보보호 추진 조직 정비 보고
2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방송전산-242(11.12.16) 스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3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4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홈페이지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5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항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소 계		6					X
합 계		12					

